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 안 번 호	1366
------------	------

제출일자 : 2017. 3.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달성군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명시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마.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2. 14. ~ 2017. 3. 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달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해당 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석평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분석평가 교육)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석평가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한 효율적, 전문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단체 등에 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염어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지방재정법」

-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